공 개

의안번호	제 294 호
의 결 연 월 일	2026. 7. 1. (제 12 차)

의결사항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 승인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7. 1.

1. 의결주문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및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5.12.19일 발표된 「코스닥 신뢰+혁신 제고방안」 및 ’26.3.18일 발표된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의 후속조치와 복수의결권 주식 관련 제도정비를 위해 한국거래소 세 개 시장의 상장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술특례상장기업 기업가치 제고 촉진 등

○ 특례상장기업에 대한 일부 상장폐지 요건 적용 유예를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조건부로 변경

○ 기술특례상장기업의 상장 후 5년 이내 사업목적 변경을 실질심사 대상에 추가

나. 코넥스 시장 유동성 개선(주식분산 요건 강화)

다. 저PBR 기업 공표제도 근거 마련

라. 복수의결권 주식 관련 제도 정비

○ 최다의결권자 정의 신설

○ 최대주주와 최다의결권자가 다른 경우 적용 방식 규정

4. 참고사항

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별지1>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1>

나.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별지2>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2>

다. 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별지3>
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3>

라. 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2026.6.24.) 심의필

바. 제12차 안건검토 소위원회(2026.6.25.) 심의필

<별 지 1>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 중 “(「상법」 제344조의 종류주식을 제외한 주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상법」 제344조에 따른 종류주식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벤처기업법”이라 한다) 제16조의11제1항에 따라 발행한 복수의결권주식(이하 “복수의결권주식”이라 한다)을 제외한 주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최다의결권자등”이란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의결권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이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주식의 의결권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이하 “최다의결권자”라 한다).

나. 최다의결권자의 특수관계인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복수의결권주식 발행기업 특례) 복수의결권주식 발행기업의 최대주주와 최다의결권자가 다른 경우 의무보유에 관한 제27조, 제44조 및 제75조, 주권비상장법인과의 합병에 관한 제37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최대주주” 또는 “최대주주등”에 각각 “최다의결권자” 또는 “최다의결권자등”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2. 의무보유의 대상이 되는 주식등에 법령에 따라 전환된 주식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3. 복수의결권주식에 대한 제27조제1항(제7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의무보유 기간은 상장일부터 벤처기업법 제16조의12제4호에서 정하는 날의 전일과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무보유기간 종료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

4. 제1호에도 불구하고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최대주주와 최다의결권자가 다른 경우에 최다의결권자가 최대주주가 되거나 최대주주가 최다의결권자가 되는 경우는 제44조제1항제3호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에서 제외한다.

제1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7조의2(주가순자산비율 하위기업 선정 및 공표) ① 거래소는 연속하는 최근 2개의 정기보고서(분기보고서를 제외한다)상 순자산액 대비 상장시가총액의 비율(이하 “주가순자산비율”이라 한다)이 모두 업종별 하위 100분의 20 이내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에 해당하는 보통주권 상장법인을 주가순자산비율 하위기업(이하 “저PBR기업”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저PBR기업 선정 및 공표와 관련하여 업종분류, 주가순자산비율 산정기준, 저PBR기업 공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 첨 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정의) 이 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8조(정의) ----------.
1. “보통주권”이란 국내법인이 발행한 것으로서 보통주식(「상법」 제344조의 종류주식을 제외한 주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주권과 특별한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을 말한다. 다만, 기업인수목적회사 주권과 집합투자증권은 보통주권에서 제외한다.	1. ----------[「상법」 제344조에 따른 종류주식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벤처기업법”이라 한다)」 제16조의11제1항에 따라 발행한 복수의결권주식(이하 “복수의결권주식”이라 한다)을 제외한 주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 14. (생 략)	2. ~ 14. (현행과 같음)
<신 설>	15. “최다의결권자등”이란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의결권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이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주식의 의결권 수가

현 행	개 정 안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이하 “최다의결권자”라 한다).
	나. 최다의결권자의 특수관계인
<신 설>	제19조의2(복수의결권주식 발행기업 특례) 복수의결권주식 발행기업의 최대주주와 최다의결권자가 다른 경우 의무보유에 관한 제27조, 제44조 및 제75조, 주권비상장법인과의 합병에 관한 제37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최대주주” 또는 “최대주주등”에 각각 “최다의결권자” 또는 “최다의결권자등”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2. 의무보유의 대상이 되는 주식등에 법령에 따라 전환된 주식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3. 복수의결권주식에 대한 제27조제1항(제7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의무보유 기간은 상장일부터 벤처기업법 제16조의12제4호에서 정하는 날의 전일과 제27

현 행	개 정 안
	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무보유기간 종료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
	4. 제1호에도 불구하고 복수의 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최대주주와 최다의결권자가 다른 경우에 최다의결권자가 최대주주가 되거나 최대주주가 최다의결권자가 되는 경우는 제44조제1항제3호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에서 제외한다.
<신 설>	제157조의2(주가순자산비율 하위기업 선정 및 공표) ① 거래소는 연속하는 최근 2개의 정기보고서(분기보고서를 제외한다)상 순자산액 대비 상장시가총액의 비율(이하 “주가순자산비율”이라 한다)이 모두 업종별 하위 100분의 20 이내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에 해당하는 보통주권 상장법인을 주가순자산비율 하위기업(이하 “저PBR기업”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저PBR기업 선정 및 공표와 관련하여 업종분류, 주가순자산비율 산정기준, 저PBR기업 공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따로 정한다.

<별 지 2>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1호 중 “종류주식”을 “종류주식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벤처기업법”이라 한다) 제16조의11제1항에 따라 발행한 복수의결권주식(이하 “복수의결권주식”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이라 한다)“을 “벤처기업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8호 중 “무상증자로 취득하는 주식”을 “무상증자로 취득하거나 법령에 따라 전환된 주식”으로 한다.

13의2. “최다의결권자등”이란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른 최다의결권자(이하 “최다의결권자”라 한다). 다만, 전문투자자가 투자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식의 의결권은 최다의결권자를 산정할 때 보유 의결권 수에서 제외한다.

1)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의결권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이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의결권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 중에서 소유하는 주식의 의결권 수가 가장 많은 자

2) 벤처금융이 최다의결권자인 경우 해당 벤처금융이 소유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제외하면 최다의결권자가 되는 자. 다만 벤처금융을 제외하면 최다의

결권자가 되는 자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다의결권자로 보지 않는다.

나. 최다의결권자의 특수관계인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복수의결권주식 발행기업 적용기준) 이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최대주주와 최다의결권자가 다른 경우에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주주등”에 각각 “최다의결권자” 또는 “최다의결권자등”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제26조제1항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복수의결권주식(벤처기업법 제16조의12에 따라 전환된 보통주식을 포함한다)을 취득한 자 : 상장일부터 벤처기업법 제16조의12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날의 전일과 제1호 등에 따른 의무보유기간 종료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까지의 기간

제31조제2항제1호 중 “최대주주”를 “최대주주(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최대주주와 최다의결권자가 다른 경우에는 최다의결권자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최대주주와 최다의결권자가 다른 경우에 최다의결권자가 최대주주가 되거나 최대주주가 최다의결권자가 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주가순자산비율 하위기업 선정 및 공표) ① 거래소는 연속하는 최근 2개의 정기보고서(분기보고서를 제외한다)상 순자산액 대비 시가총액의 비

율(이하 “주가순자산비율”이라 한다)이 모두 업종별 하위 100분의 20 이내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에 해당하는 보통주식 상장법인을 주가순자산비율 하위기업(이하 “저PBR기업”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저PBR기업 선정 및 공표와 관련하여 업종분류, 주가순자산비율 산정기준, 저PBR기업 공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따로 정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중 “변경되는 경우”를 “변경되는 경우(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최대주주와 최다의결권자가 다른 경우에 최다의결권자가 최대주주가 되거나 최대주주가 최다의결권자가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로 한다.

제53조제1항제1호가목의 “이익미실현기업”을 “세칙으로 정하는 이익미실현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가목의 “이익미실현기업”을 “세칙으로 정하는 이익미실현기업”으로 한다.

제56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상장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술성장기업이 정관변경을 통해 사업목적을 추가·변경한 경우

제77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복수의결권주식(벤처기업법 제16조의12에 따라 전환된 보통주식을 포함한다)을 취득한 자 : 합병상장일부터 벤처기업법 제16조의12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날의 전일과 제1호 등에 따른 의무보유기간 종료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까지의 기간

규정 제2343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 부칙 제4조제1항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성장기업의 사업목적 추가·변경에 따른 실질심사 관련 적용례) 제56조제1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부터 적용한다.

<별 첨 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보통주식"이란 국내기업의 발행주식 중에서 「상법」 제344조에 따른 종류주식을 제외한 주식을 말한다. 다만, 기업인수목적회사 또는 제85조의2제2호에 따른 기업성장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제외한다.	11. ---------- 종류주식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벤처기업법”이라 한다) 제16조의11제1항에 따라 발행한 복수의결권주식(이하 “복수의결권주식”이라 한다)----------.
12.·13. (생 략)	12.·13. (현행과 같음)
<신 설>	13의2. “최다의결권자등”이란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른 최다의결권자(이하 “최다의결권자”라 한다). 다만,

현 행	개 정 안
	전문투자자가 투자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식의 의결권은 최다의결권자를 산정할 때 보유 의결권 수에서 제외한다.
	1)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의결권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이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의결권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 중에서 소유하는 주식의 의결권 수가 가장 많은 자
	2) 벤처금융이 최다의결권자인 경우 해당 벤처금융이 소유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제외하면 최다의결권자가 되는 자. 다만 벤처금융을 제외하면 최다의결권자가 되는 자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다의결권자로 보지 않는다.
	나. 최다의결권자의 특수관계인
14. “벤처금융”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4. ---------- 벤처기업법 ----------

현 행	개 정 안
(이하 “벤처기업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 ---------- -----.
15. ~ 17. (생 략)	15. ~ 17. (현행과 같음)
18. “의무보유”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의무보유 대상자가 가진 주식등을 일정 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거나 예탁결제원에 해당 주식등을 보관하여 그 주식등의 계좌간 대체, 질권 설정·말소, 매각, 인출 등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주식등에는 의무보유 대상인 주식등에 부여된 권리의 행사, 주식배당 및 세칙으로 정하는 무상증자로 취득하는 주식을 포함한다.	18. ---------- ---------- ---------- ---------- ---------- ---------- ---------- ---------- ---------- ----------. ------ ---------- ---------- ---------- ----- 무상증자로 취득하거나 법령에 따라 전환된 주식 ----------.
19.~38. (생 략)	19.~38.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의2(복수의결권주식 발행기업 적용기준) 이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최대주주와 최다의결권자가 다른 경우에는 “최대주주” 또는

현 행	개 정 안
	“최대주주등”에 각각 “최다의결권자” 또는 “최다의결권자등”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제26조(신규상장 의무보유) ① 보통주식 신규상장의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신청인의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6조(신규상장 의무보유) ① ---------- ---------- ---------- ---------. ---------- ---------- ---------- ---------- ---------- ---------- ---------- -------제7호---------- ----------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복수의결권주식(벤처기업법 제16조의12에 따라 전환된 보통주식을 포함한다)을 취득한 자 : 상장일부터 벤처기업법 제16조의12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날의 전일과 제1호 등에 따른 의무보유기간 종료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까지의 기간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1조(신속이전기업에 대한 특례) ① (생 략)	제31조(신속이전기업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거래소는 신속이전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는 제29조제1항제2호의 질적 심사요건 중 경영안정성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
1. 상장신청일 현재 최대주주가 소유하는 보통주식의 총수가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 이 경우 전환권·신주인수권 등의 권리행사로 인하여 증가될 주식 수를 포함한다.	1. ----------최대주주(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최대주주와 최다의결권자가 다른 경우에는 최다의결권자를 말한다)----------.
2.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최대주주가 변경되지 않았을 것 <단서 신설>	2. ---------- 다만,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최대주주와 최다의결권자가 다른 경우에 최다의결권자가 최대주주가 되거나 최대주주가 최다의결권자가 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7조의2(주가순자산비율 하위기업 선정 및 공표) ① 거래소

현 행	개 정 안
	는 연속하는 최근 2개의 정기 보고서(분기보고서를 제외한다)상 순자산액 대비 시가총액의 비율(이하 “주가순자산비율”이라 한다)이 모두 업종별 하위 100분의 20 이내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에 해당하는 보통주식 상장법인을 주가순자산비율 하위기업(이하 “저PBR기업”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저PBR기업 선정 및 공표와 관련하여 업종분류, 주가순자산비율 산정기준, 저PBR기업 공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따로 정한다.
제50조(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시 의무보유) ① 보통주식 상장법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배정받은 주식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1.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세칙으로 정하는 실권주 처리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로 보통주식 상장법인의 최	제50조(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시 의무보유) ① ---------- ---------- ---------- ---------- ---------- ---------- ----------. 1. ---------- ---------- ---------- ----------

현 행	개 정 안
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해당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 발행일부터 추가상장일 이후 6개월	--------변경되는 경우(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최대주주와 최다의결권자가 다른 경우에 최다의결권자가 최대주주가 되거나 최대주주가 최다의결권자가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3조(관리종목) ① 거래소는 보통주식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통주식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제53조(관리종목) ① ---------.
1. 매출액 미달: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에 대하여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1. --------: ----------.
가. 이익미실현기업 또는 세칙으로 정하는 기술성장기업: 신규상장일(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상장인 경우 합병상장일로 한다)이 속한 사업	가. 세칙으로 정하는 이익미실현기업----------: ----------

현 행	개 정 안
연도를 포함하여 연속하는 5개 사업연도. 다만, 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이후 5개 사업연도로 한다.	---------- ---------- ---------- ---------- ---------- ---------- ----------.
2.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에 각각 10억원 이상이면서 해당 사업연도 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세칙으로 정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발생하고, 최근 사업연도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하는 사업연도는 본문의 요건을 적용할 때 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에서 제외한다.	2. ----------: ---------- ---------- ---------- ---------- ---------- ---------- ---------- ---------- ---------- ----------.
가. 이익미실현기업: 신규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부터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연속하는 5개 사업연도. 다만, 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가. 세칙으로 정하는 이익미실현기업: ---------- ---------- ---------- ---------- ----------

현 행	개 정 안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이후 5개 사업연도로 한다.	---------- ---------- ---------- ----.
3. ~ 13. (생 략)	3. ~ 13. (현행과 같음)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56조(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보통주식 상장법인에 대하여 제57조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에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통주식을 상장폐지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재무요건의 적용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56조(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 ① ---------- ---------- ---------- ---------- ---------- ---------- ---------- ---------- ---------- ----------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상장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술성장기업이 정관변경을 통해 사업목적을 추가·변경한 경우
7. ~ 19. (생 략)	7. ~ 1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7조(합병상장 의무보유) 기업	제77조(합병상장 의무보유) ----

현 행	개 정 안
인수목적회사의 합병상장의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 대상 법인의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 ---------- --------.---------- ---------- ---------- ---------- ---------- ---------- ---------- ---------- ---------.
1.~5. (생 략)	1.~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복수의결권주식(벤처기업법 제16조의12에 따라 전환된 보통주식을 포함한다)을 취득한 자 : 합병상장일부터 벤처기업법 제16조의12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날의 전일과 제1호 등에 따른 의무보유기간 종료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까지의 기간

<별 지 3>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7호의3 각 목 외의 부분 중 “100분의 5”를 “100분의 15 이내의 수량으로서 세칙에서 정하는 수량에 미달하거나, 해당 주식을 소유한 주주의 수가 세칙에서 정하는 수”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 첨 3>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상장의 폐지) ① 거래소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상장을 폐지한다.	제28조(상장의 폐지) ① ---------- ---------- ---------- ----------.
1. ~ 7의2. (생 략)	1. ~ 7의2. (현행과 같음)
7의3. 최근 사업연도(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제외한다) 말 현재 발행된 보통주식총수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을 뺀 주식의 수가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5에 미달(이하 "분산요건미달"이라 한다)하는 경우	7의3. ---------- ---------- ---------- ---------- ---------- --------100분의 15 이내의 수량으로서 세칙에서 정하는 수량에 미달하거나, 해당 주식을 소유한 주주의 수가 세칙에서 정하는 수 ---------- -----
가. ~ 나. (생 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8. ~ 14. (생 략)	8. ~ 1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소관부서	자본시장과
연 락 처	02-2100-2644